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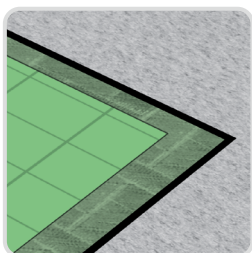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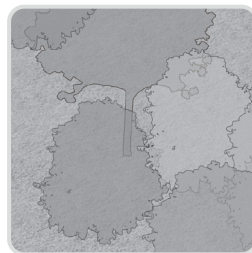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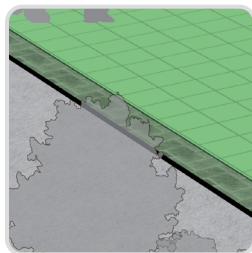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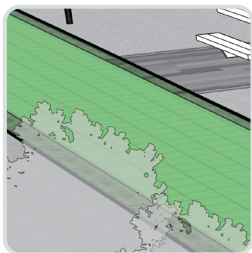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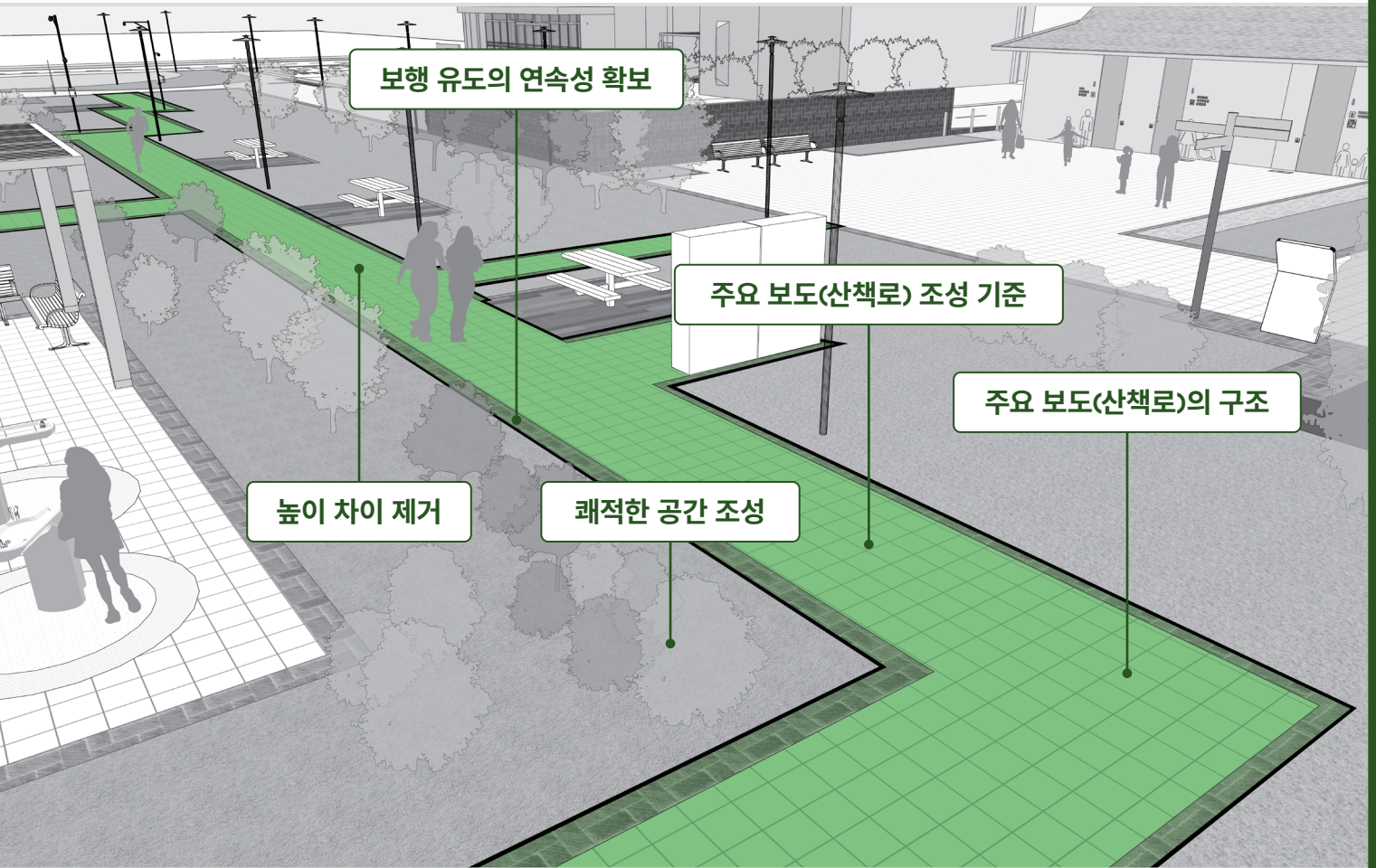
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1)	내부 이동 공간	127
(2)	내부 이용 공간	136

계획원칙

공원의 내부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해야 하며, 공원 내 주요시설은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원의 용도·지형·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약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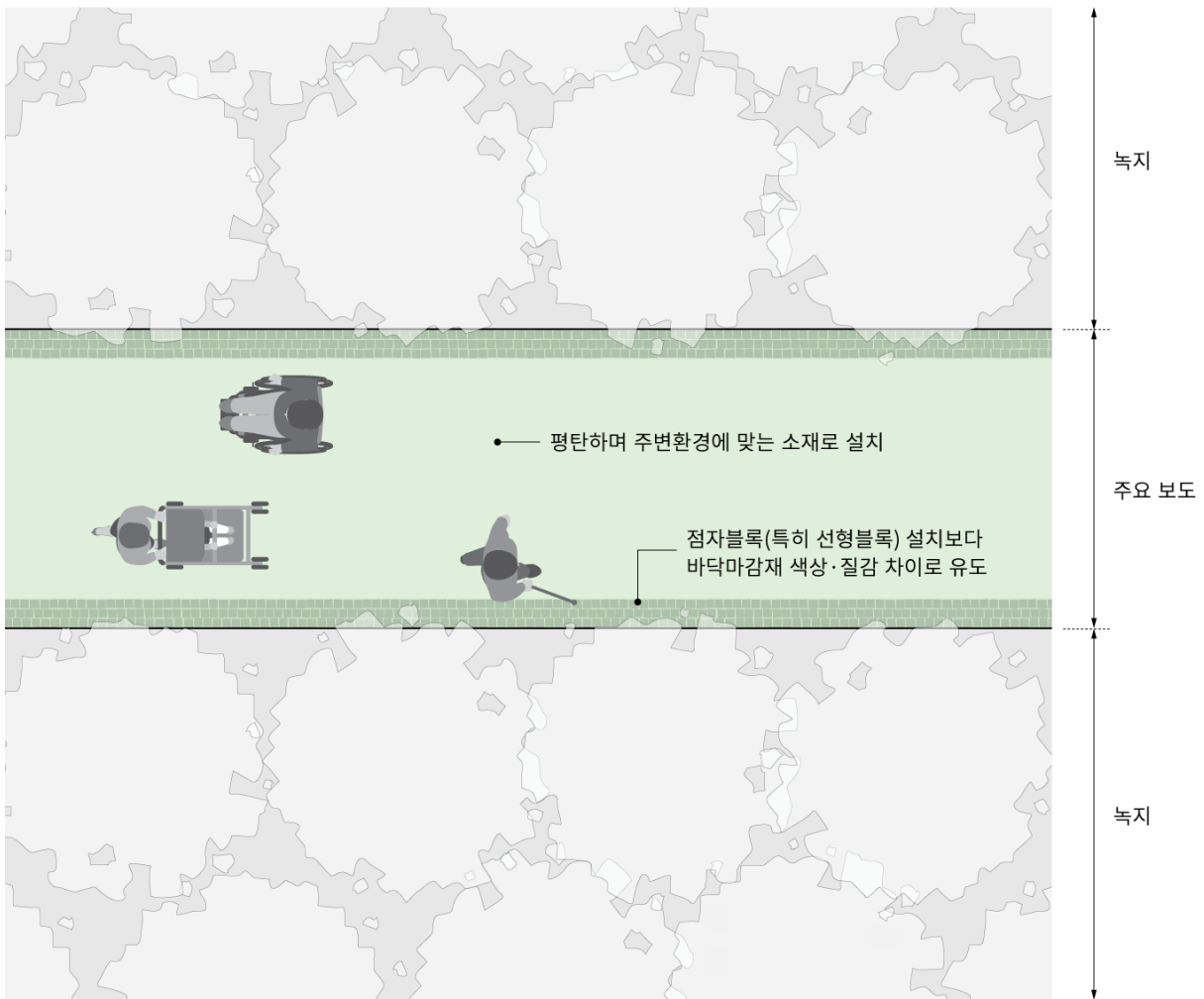
(1) 내부 이동 공간



주요 보도(산책로) 조성 기준

공원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행로를 설치하되, 공원 내 주 이용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공원의 주출입구로부터 공원 내의 주 이용시설(공원 시설, 위생시설, 관리 사무실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주요 보도로 조성한다.
- 주요 보도는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어려움 없는 기울기와 재질로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연속적인 보행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자연 지형으로 불가피하게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산책이 가능한 기준으로 적합한 산책 동선을 개발·적용하고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내 주요 보도를 제외한 보행로는 일반 보도로써 휠체어, 유아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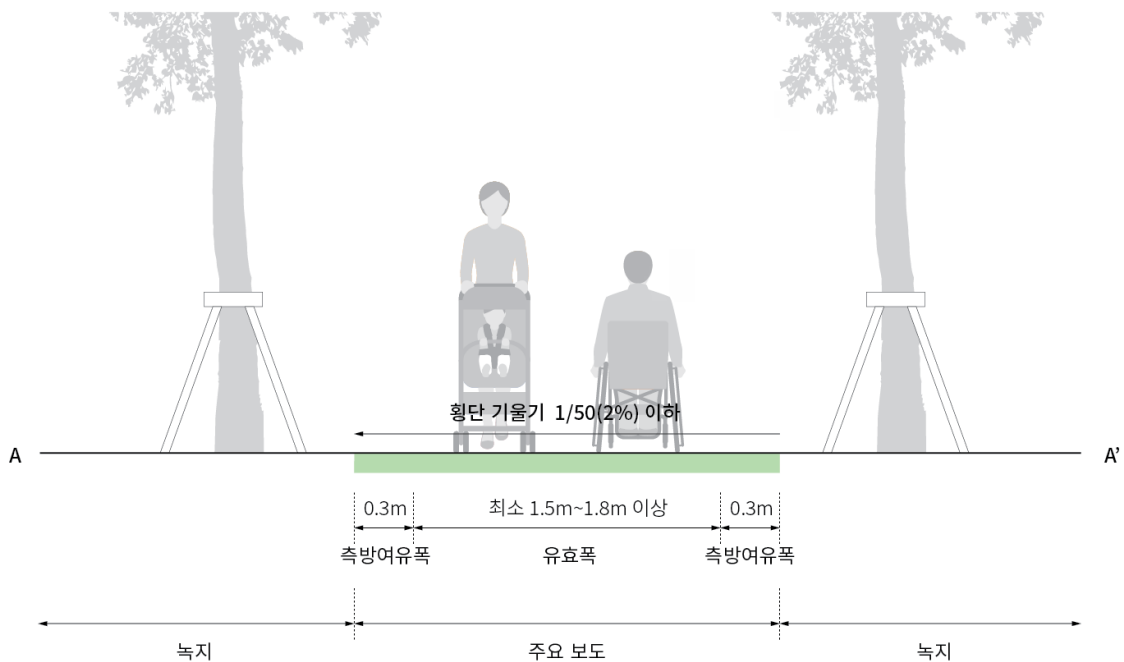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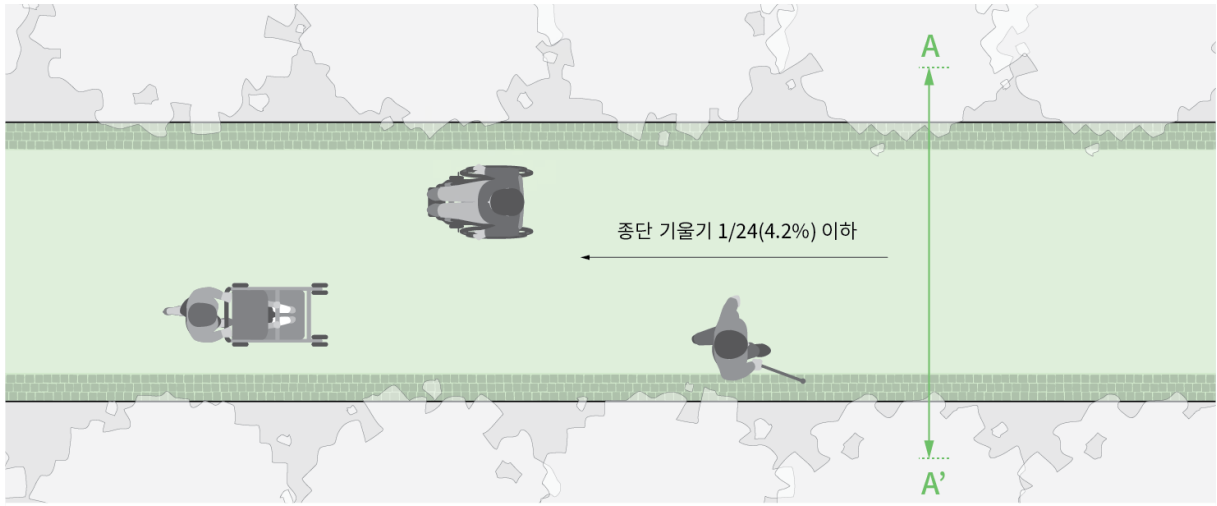
주요 보도(산책로)의 구조

공원 내 주요 보도는 누구나 이용 및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며, 공원 내 다른 이동 수단(자전거 등)을 위한 통로가 존재할 경우 보행안전공간과의 교행이 없도록 계획한다.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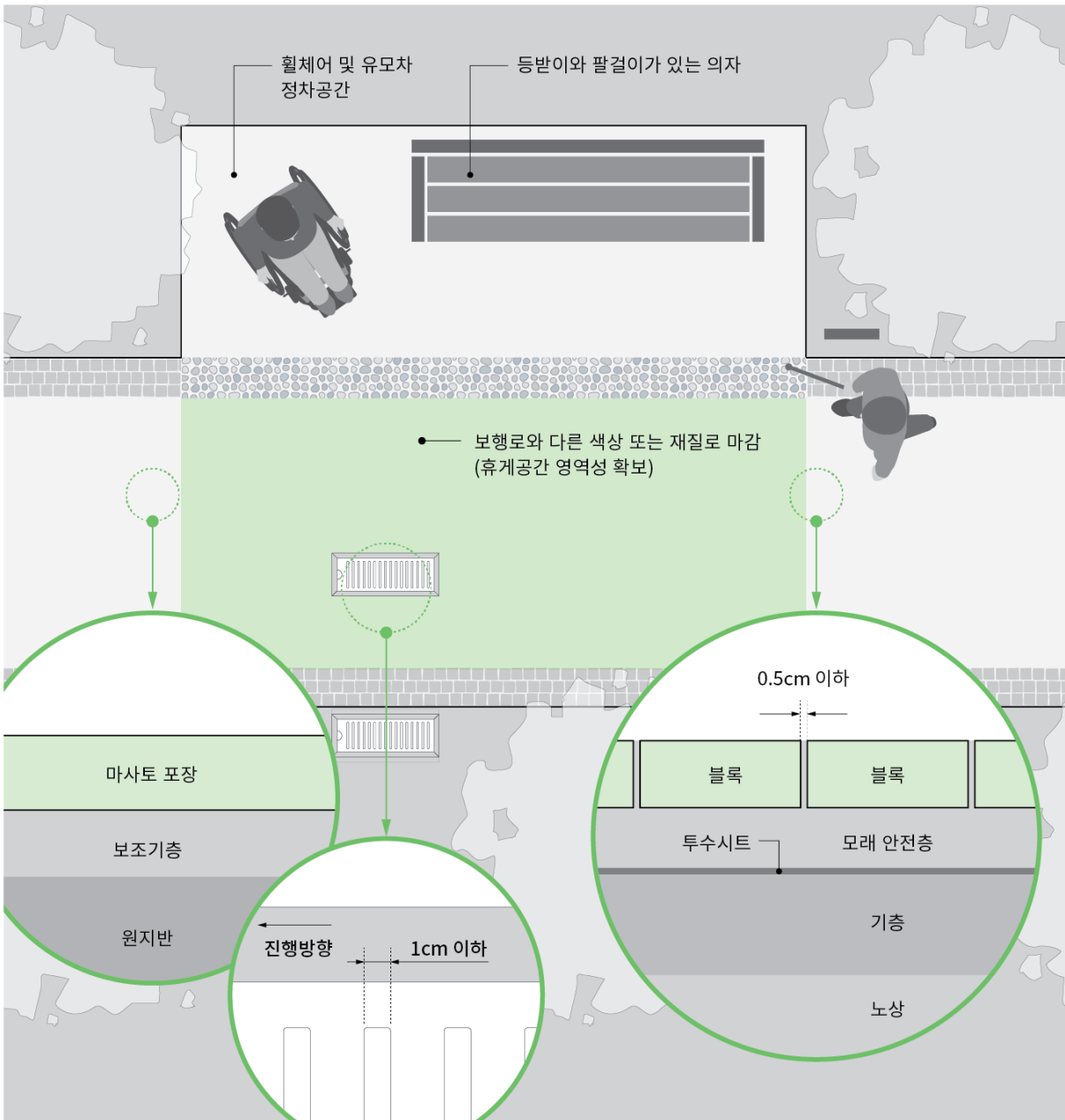
- 주요 보도는 수평 유효폭 1.8m 이상, 수직안전높이 2.5m 이상을 확보한다.
- 주요 보도는 종단 기울기 1/24 이하, 횡단 기울기 1/50 이하로 계획한다.
- 공원 내 다른 이동수단(자전거 등)의 통로와 교행하는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광장 산책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42~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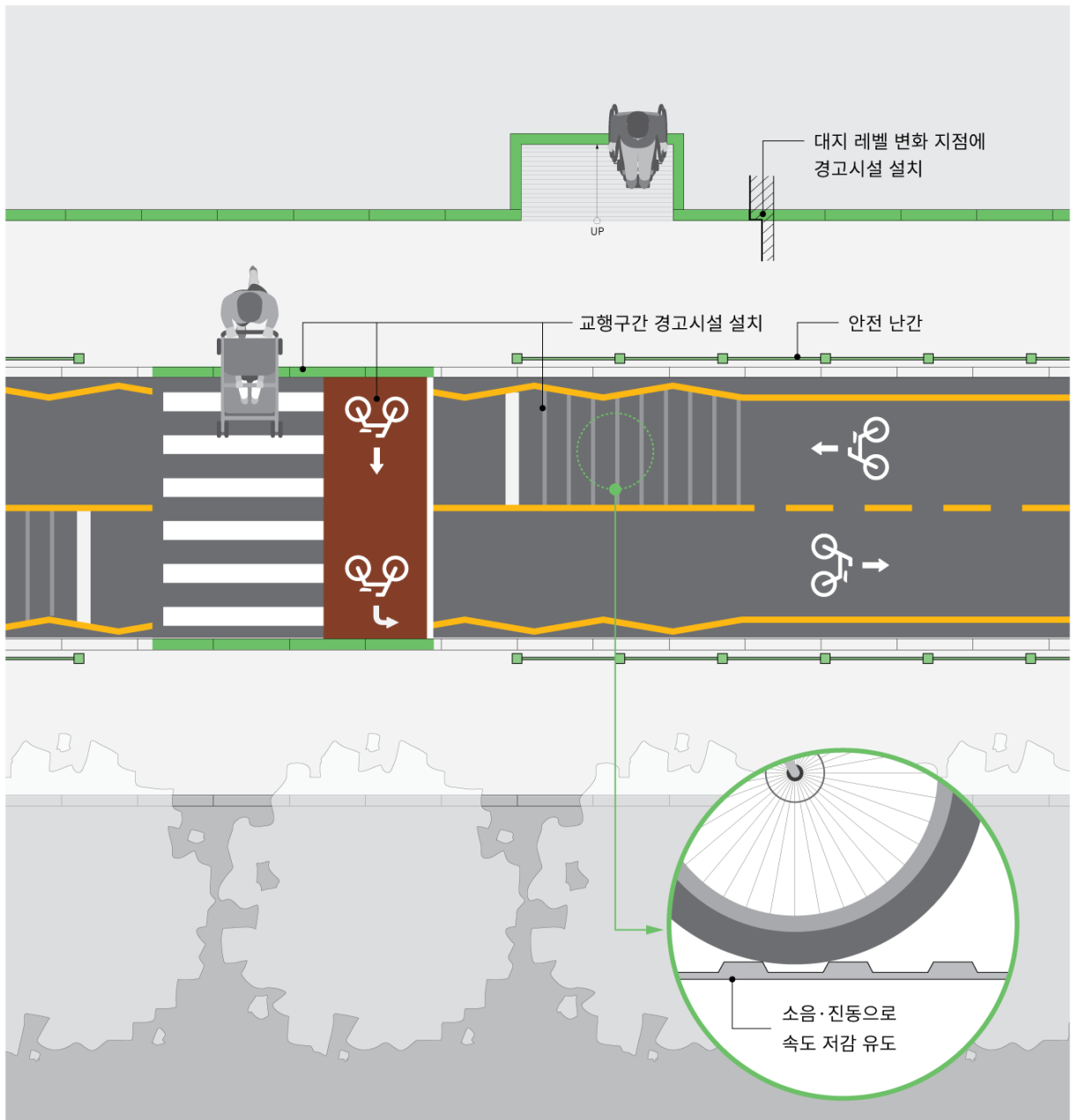
보행 장애 요소 제거

- 산책로 상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휴게공간 및 의자는 산책로 인접 조경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바닥은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단차 및 틈새 없이 마감하며, 블록 마감 등은 줄눈 간격 0.5cm 이하로 설치한다.
- 우배수 관련 덮개 등은 조경 구간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보행로 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틈새 간격 1cm 이하인 것으로 설치한다.
- 바닥에 배수, 맨홀, 수목 보호 덮개 설치 시 인접 보도 마감과 평탄하게 처리한다.
- 산책로 상에 설치하는 손잡이, 안내표시 등 보행 유도과 관련된 시설은 조경, 식물 등으로 가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차 및 높이 변화 구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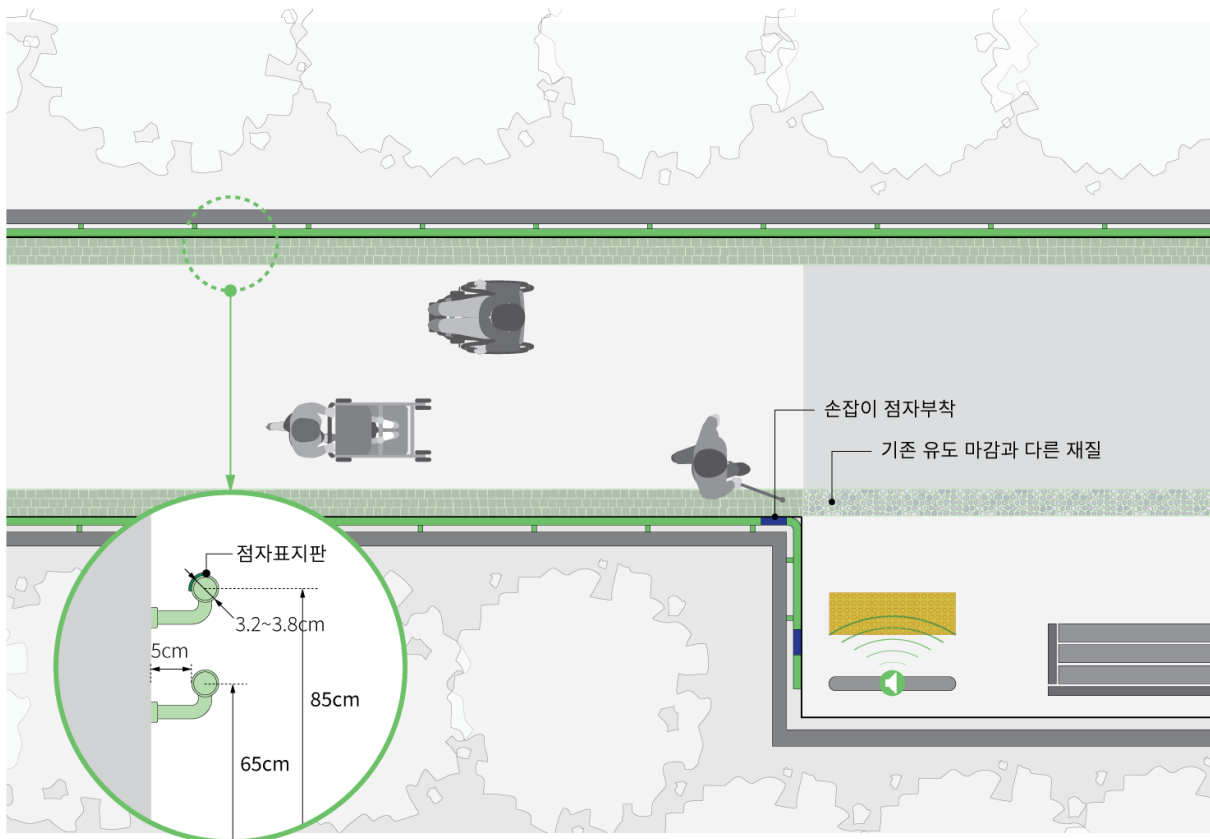
- 대지 레벨이 변화되는 지점(경사로, 계단 등)에는 색상 및 재질 차이를 활용한 적절한 바닥 경고시설을 설치한다. 이때 과도하고 복잡한 패턴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재질로의 설치는 지양한다.
- 공원 내 다른 이동수단(자전거 등)의 통로와 교행하는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 우선 계획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교행구간 전후 경고시설 설치(자전거 사용자 및 보행자용 통로에 모두 설치)
 - * 전후 경고시설은 바닥재질 및 색상, 입식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설치.
(단, 입식 안내표지판은 자전거 및 보행자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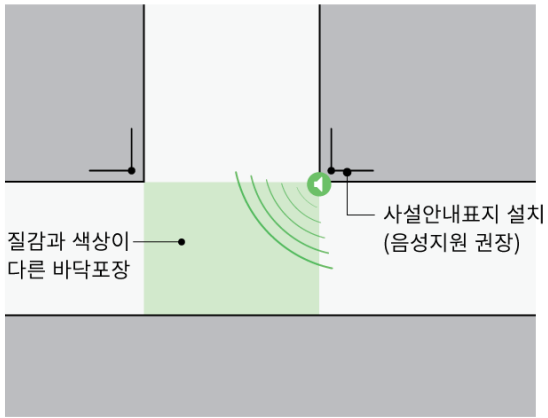
보행 유도의 연속성 확보

공원 내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은 누구나 인지가 가능하도록 보행 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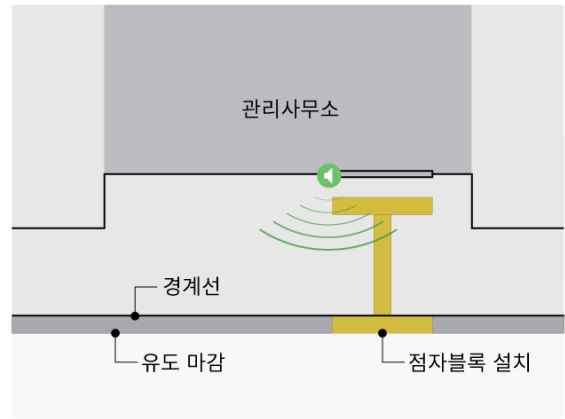
- 공원 내 기본적인 보행 유도는 보행안전공간의 양 경계 쪽의 마감 재질 변화 등을 활용한다.
- 별도의 보행 유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책로를 따라 보행 유도 손잡이 혹은 보조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유도를 위해 주요시설(화장실, 관리사무소 등)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음성/음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광장 등 경계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유도를 위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등 명확한 유도 방식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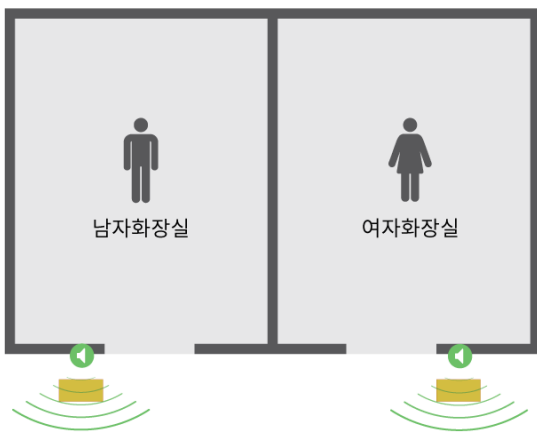
교차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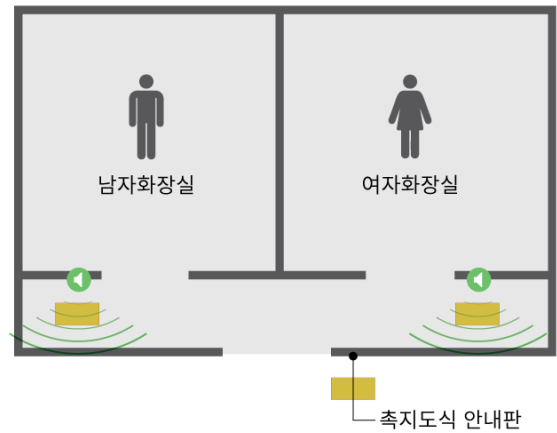
공원 간선로와 연결된 시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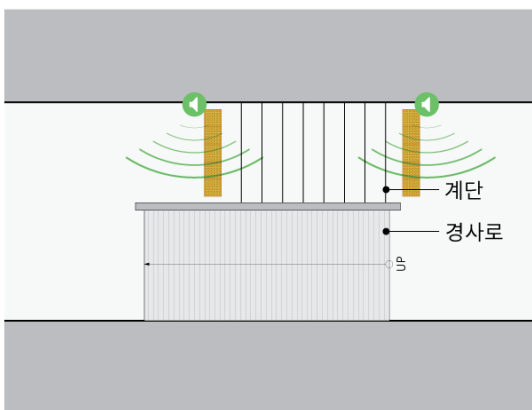
나뉘어진 화장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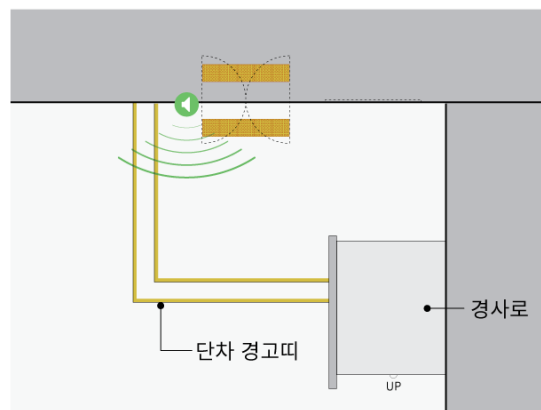
공동입구 후 나뉘어진 화장실



계단 및 경사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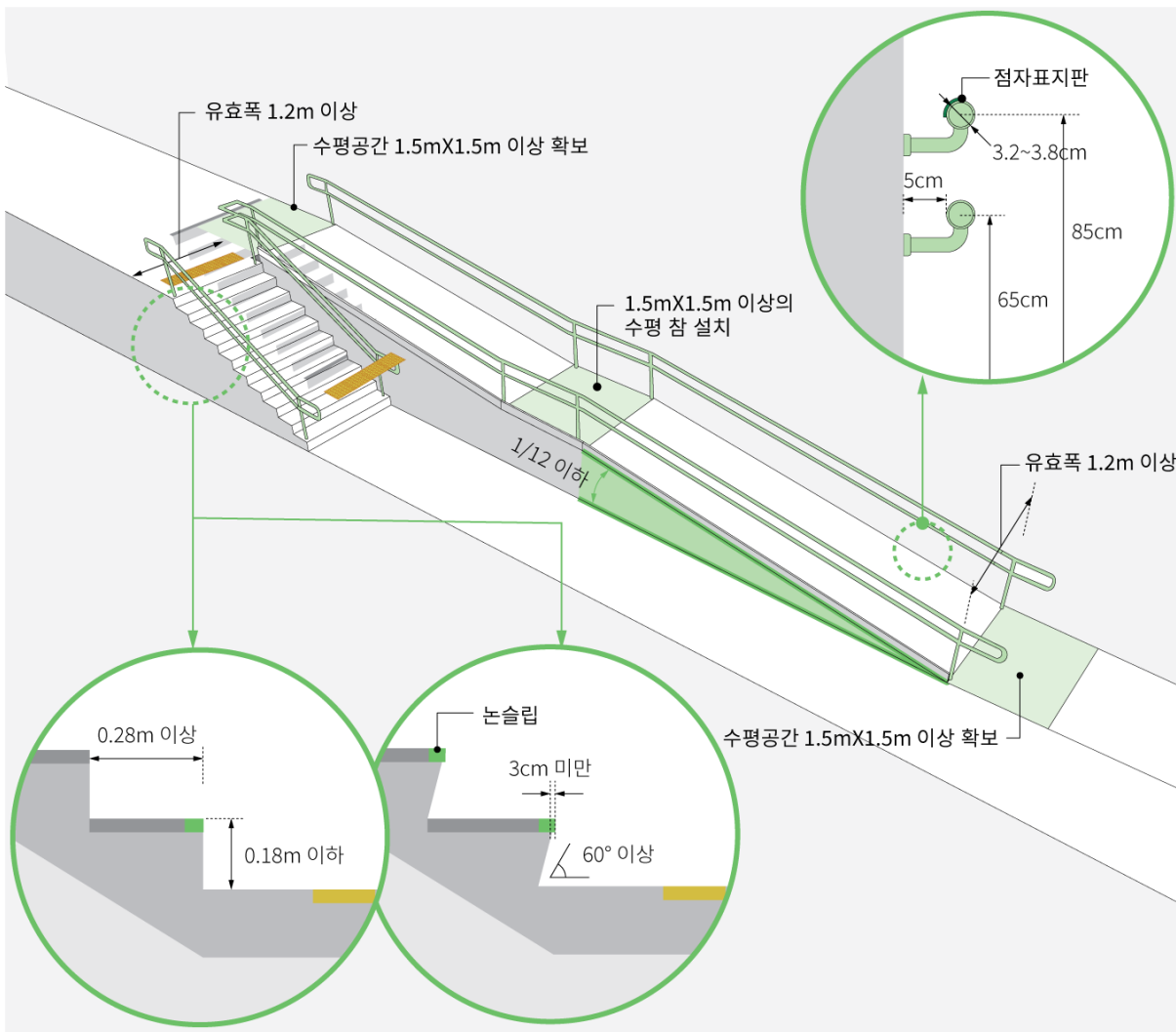
건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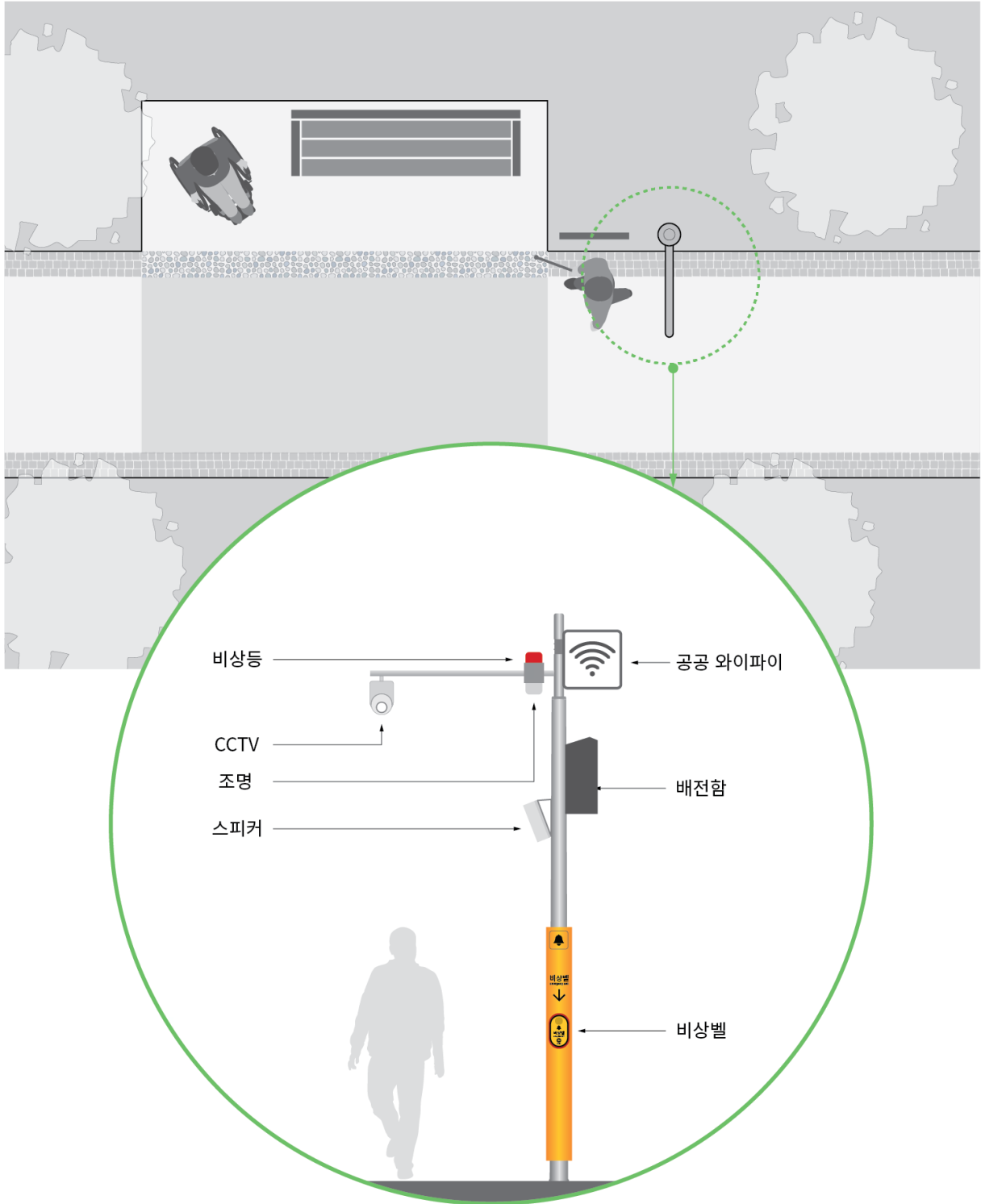
주요 보도 상에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단과 경사로는 유효폭 1.2m 이상, 시작과 끝 지점 1.5m 이상의 수평 공간을 확보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 참을 설치한다.
(단, 높이 차이 1m 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 양측에는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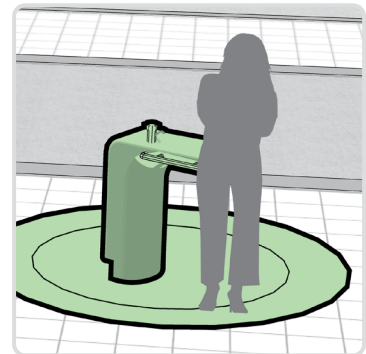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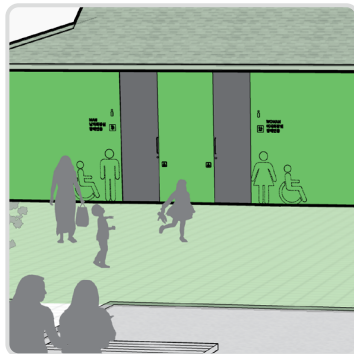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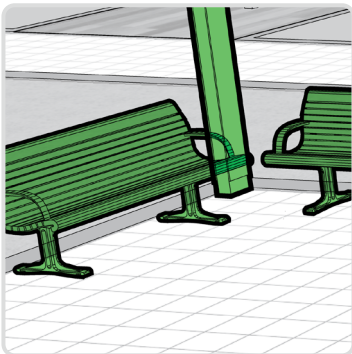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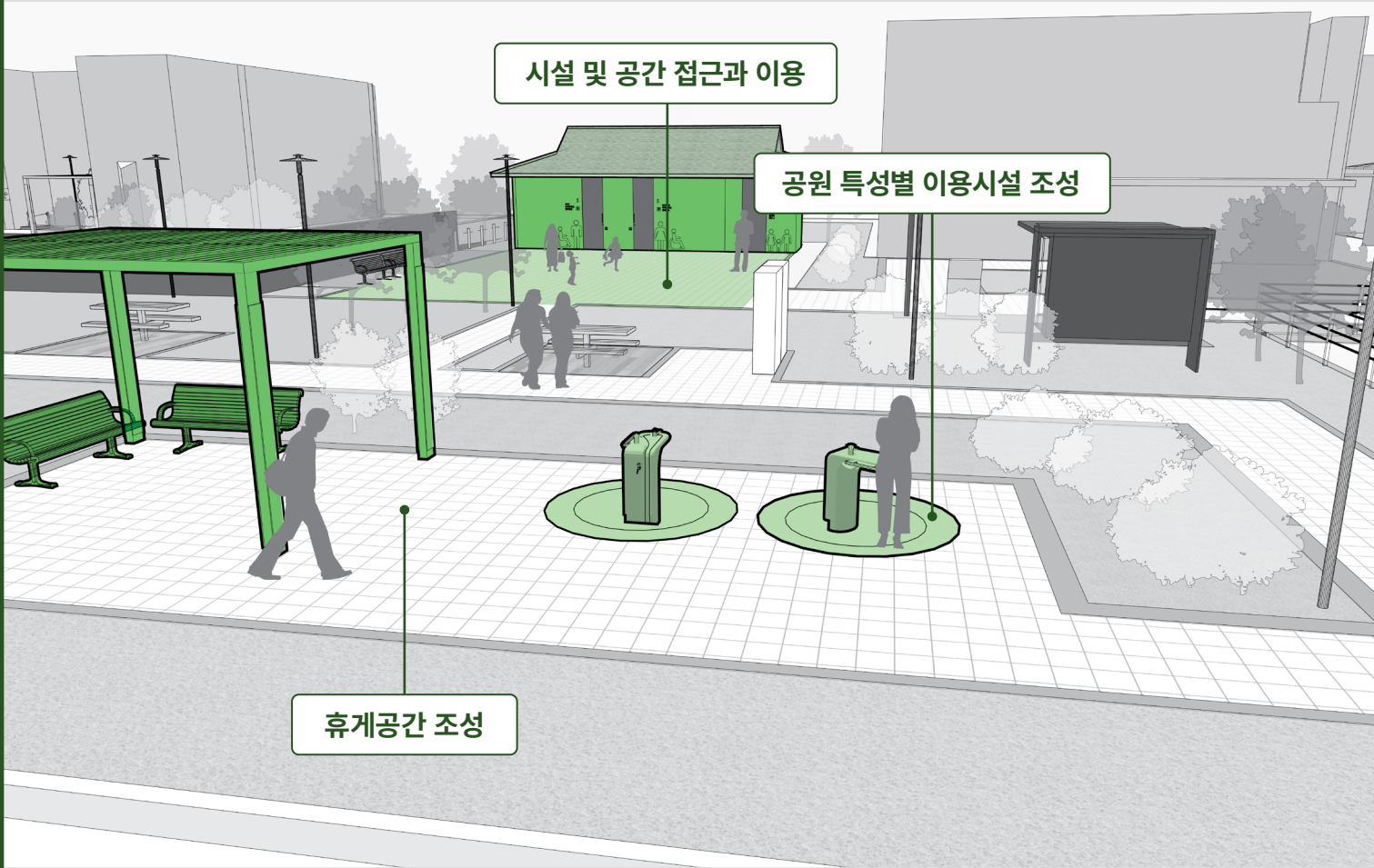


쾌적한 공간 조성

산책로 주변에는 식재, 휴게공간, 가로등,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시설물을 통합하여 최소로 설치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2) 내부 이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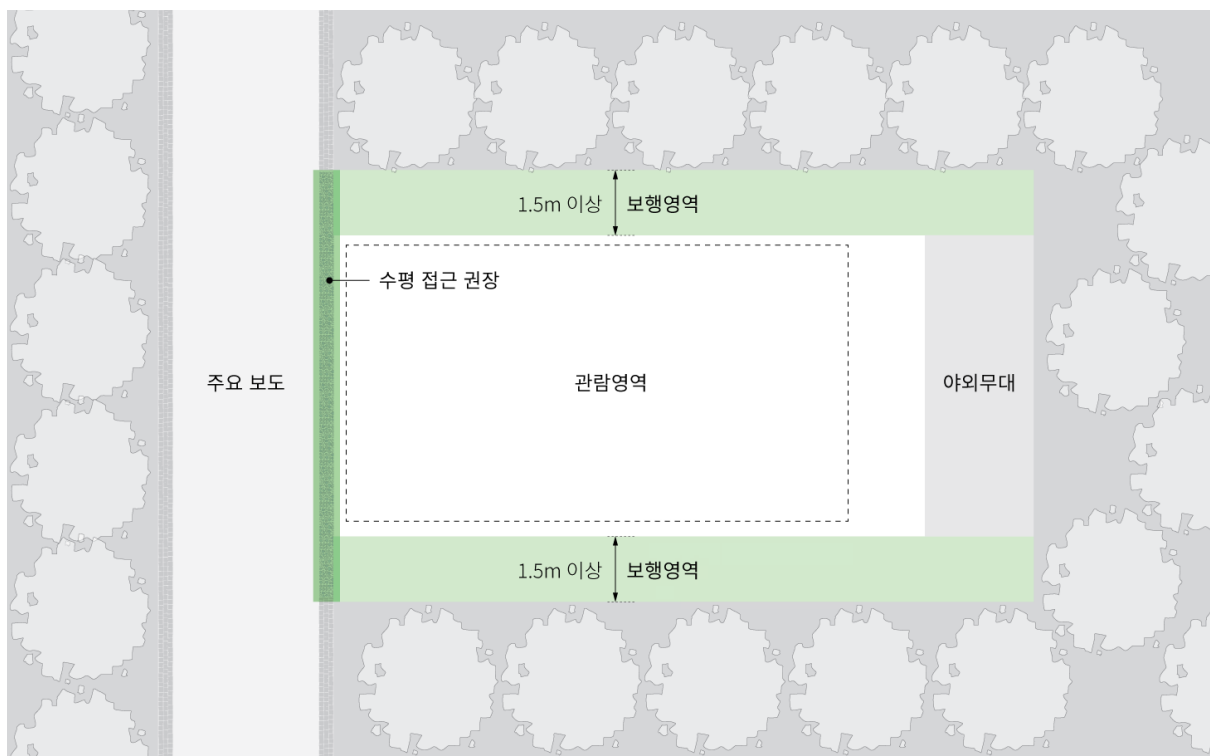


시설 및 공간 접근과 이용

공원 내 주요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접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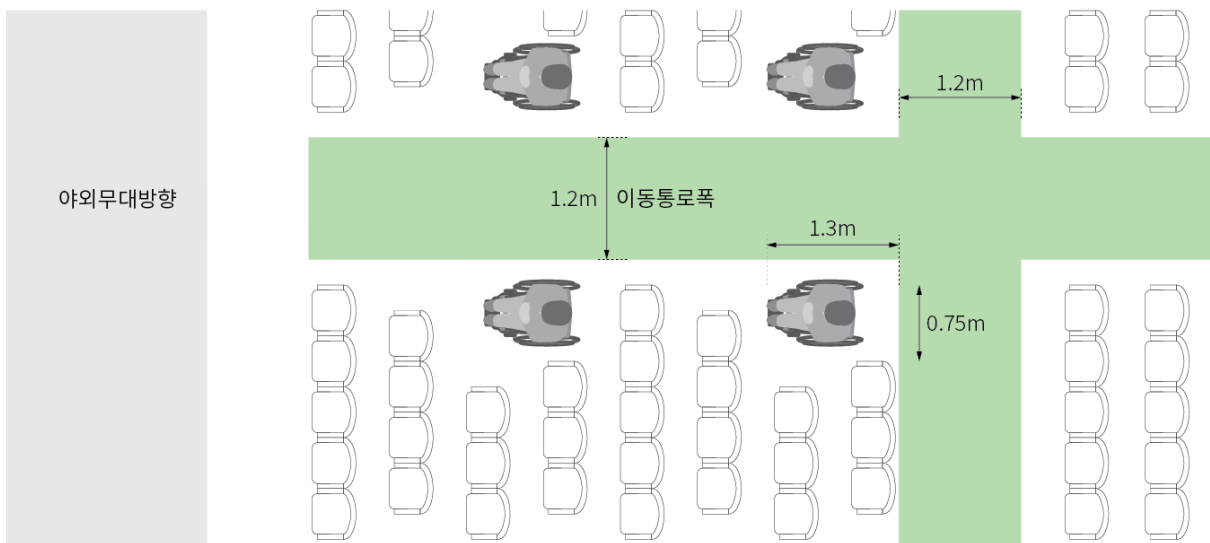
- 공원 내 주요시설이란 안내소 및 관리사무소, 판매시설, 위생시설, 운동·놀이 공간, 정원 등을 말한다.
- 주요시설은 주요 보도(산책로)로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안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유도 및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문)는 주요 보도에서 1/24 이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 0.6m 이상과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공간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공간으로 확보한다.
- 구릉지 등 지형과 같은 물리적 제약 상황으로 불가피한 높이 차이 발생 시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구역 내 조망 지점, 놀이·운동 공간, 야외 무대, 정원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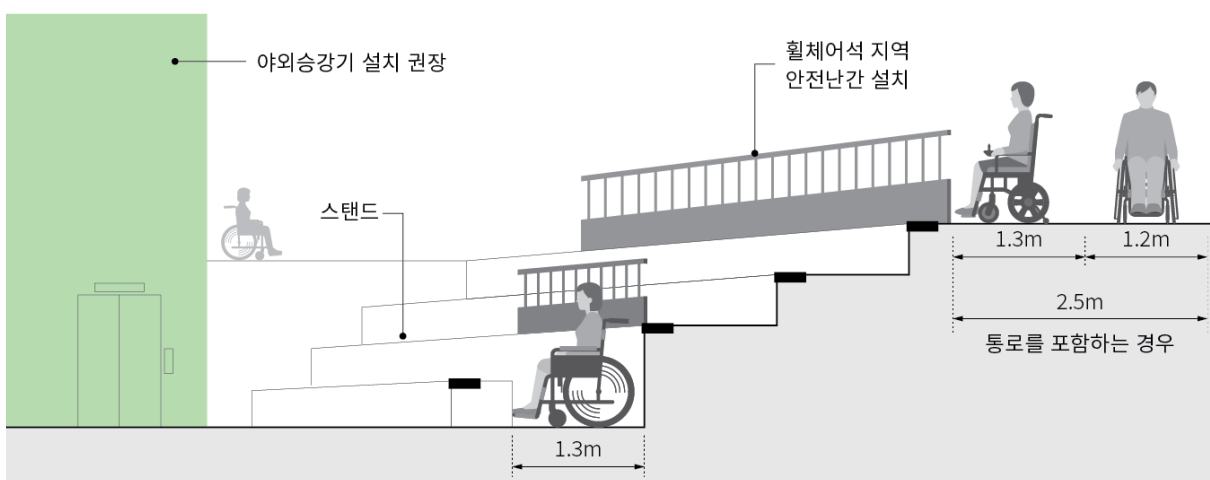
이용 기준

-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적절한 내부 활동공간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시설은 보호자 등 동반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어린이 이용 등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시설 인근에는 휴게의자 및 그늘 등의 휴게·감시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시설 이용 후 세면·세족·샤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간이 세면·세족·샤워 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시설은 위험 지역(교통시설, 잠재적 위험 지역 등)에서 이격 혹은 안전시설(난간 등)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평지형 공연장



경사형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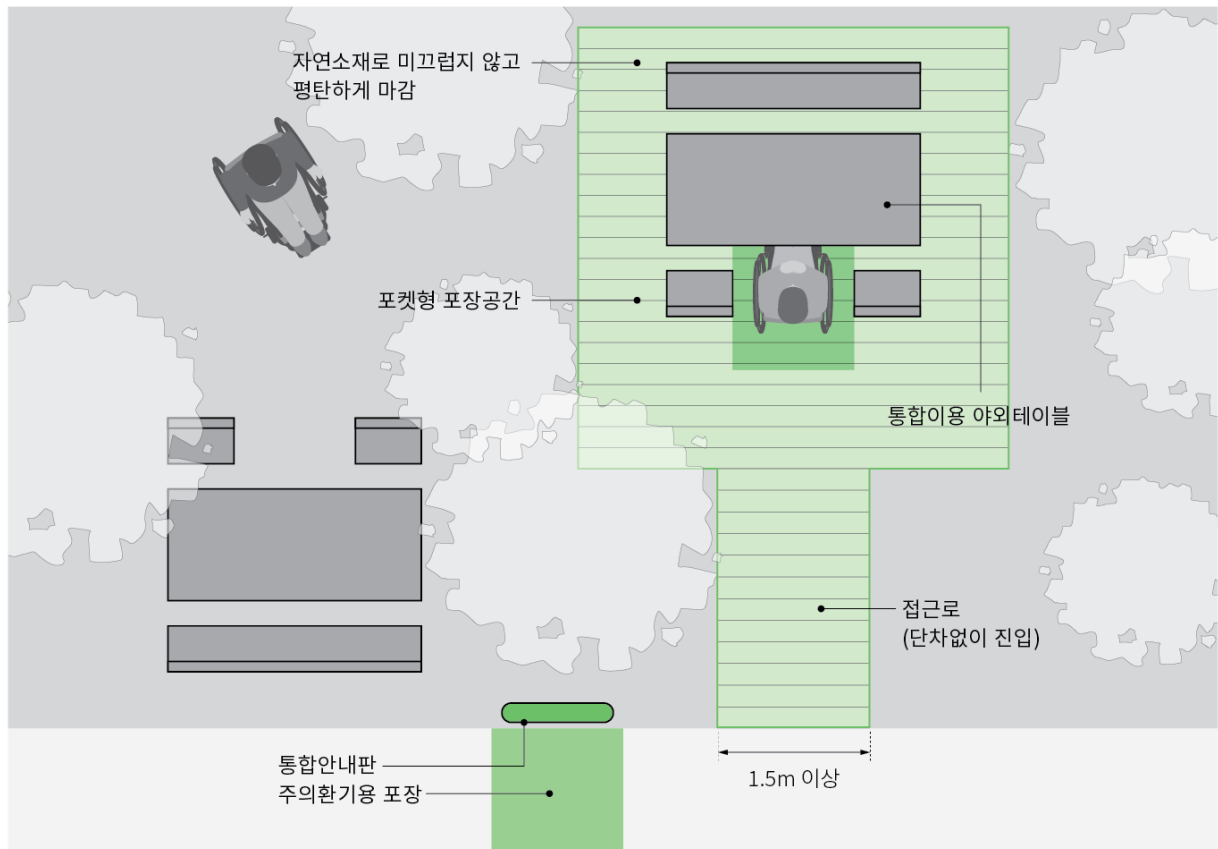
휴게공간 조성

공원 내 휴게공간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나 유아차 사용자 등 누구나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공간 조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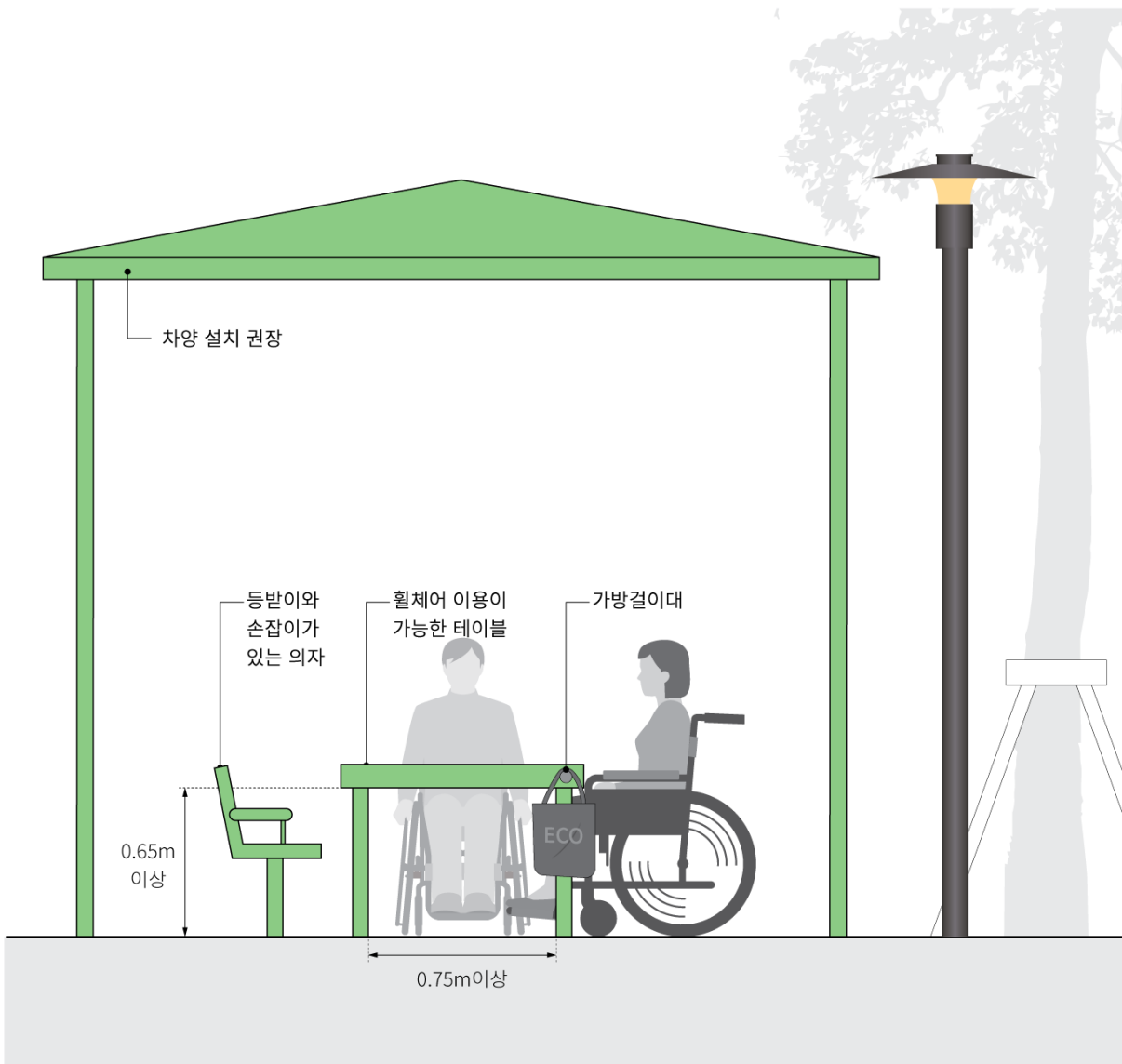
- 휴게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단차 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게 설치하며, 보행로에 인접 설치할 경우에는 포켓형으로 설치한다.
- 주 출입공간, 주요시설 전면부 등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머무는 일이 잦은 장소는 광장화하도록 권장한다.
- 휴게의자 설치 공간 외에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의 활동공간 1.5m 이상을 확보한다.
- 휴게공간은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키 낮은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감을 주고, 접근과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공원·광장 휴게시설의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46~59 참조



휴게의자 설치 기준

-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휴게의자는 전체 설치하는 의자 중 1/2 이상을 설치하며,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1인, 가족 등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휴게공간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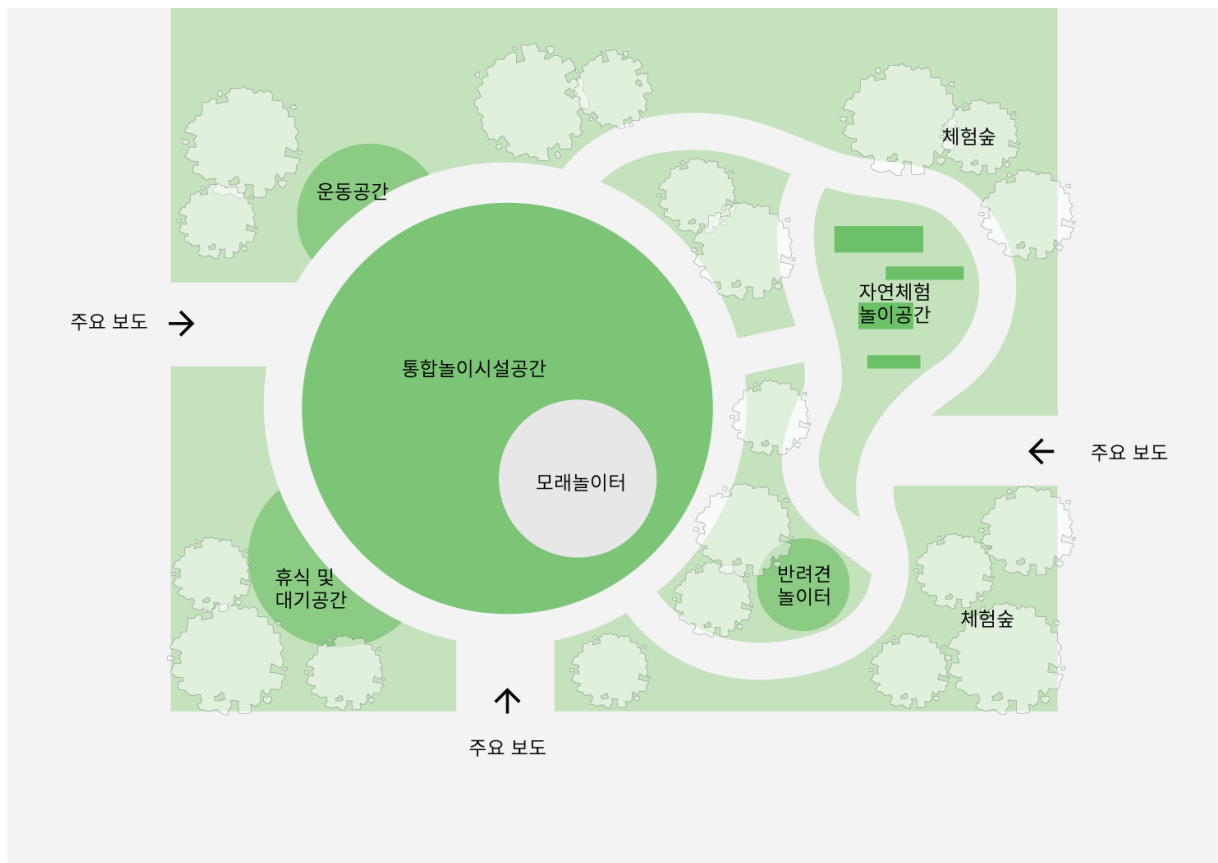


공원 특성별 이용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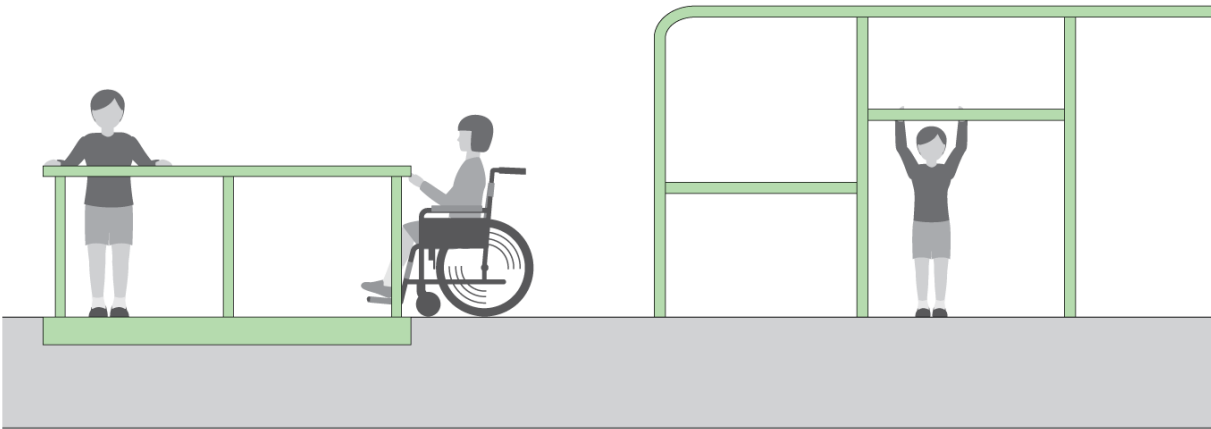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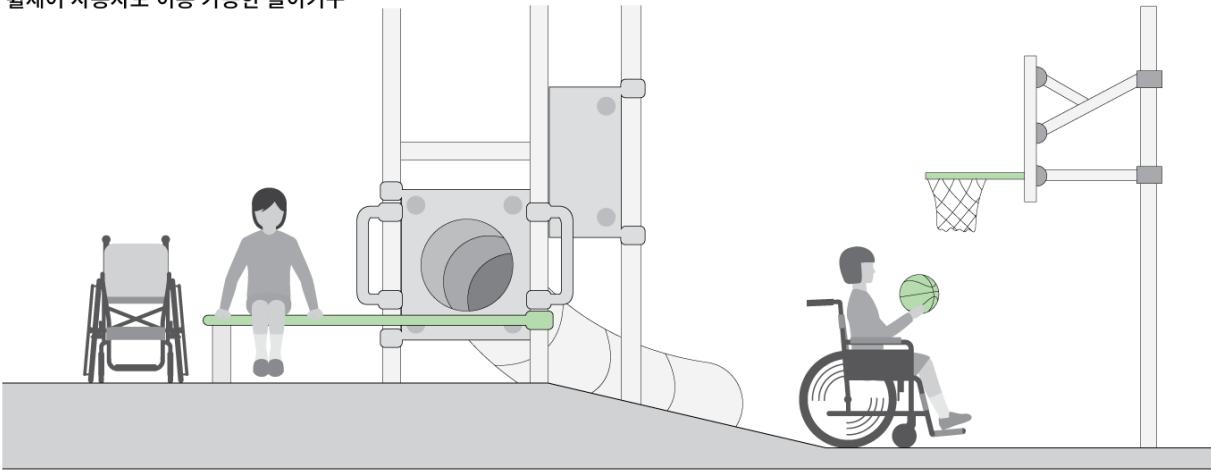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정원,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노인, 어린이 등 공원의 주 사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한다.
- 각 시설 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접근로, 출입공간 및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예는 아래와 같다.
 -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 놀이시설 등의 놀이시설 설치
 - 사·청각 장애인 등이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치유 및 감각 정원 등의 정원시설 설치
 - 반려견 동반자 등을 고려한 애완견 놀이시설 및 산책 공간의 설치

* 공원·광장 놀이터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52-53 참조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다양한 유형의 그네 놀이기구

